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 중재에 관한 연구 - 포스코와 네이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pected Dispute Arbitration in Supply Chain ESG
Management: Focusing on the cases of POSCO and NAVER

이건우**

Lee, Geonwoo

이정은***

Lee, Jungeun

이훈종****

Lee, Hunjong

〈목 차〉

- I. 서론
 - II. 공급망 ESG 관리와 분쟁의 유형
 - III. 분쟁의 중재
 - IV. 대한상사중재원에의 제언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ESG, 공급망, 상사중재, 표준계약서, 전문중재인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한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에서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학부생, 주저자, g7459006@naver.com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학부생, 공동저자, lje-305@hanmail.net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교신저자, hjlee@dongguk.edu

I. 서론

‘ESG 경영’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전략이다. 이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¹⁾

ESG 경영을 둘러싼 여러 이슈 가운데, ‘공급망 ESG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공급망 ESG 관리란 ‘공급망 관리자 기업’이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 대하여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여 지속가능하고 강건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작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²⁾,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을 지난해 연초부터 시행하였다.³⁾ 다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확정된 기후공시 의무화법(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은 스코프3에 대한 탄소 배출량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⁴⁾

공급망 ESG 관리는 국내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EU 등이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기업평판이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급망 ESG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8.8%로 집계되었으며,⁵⁾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서기 시작

1) 2015년 UN 총회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하여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제시하였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이 EU 내 생산되는 동종 상품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계산하여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현재 공정대로 철강 생산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법령이 발효되는 2026년부터 EU 철강 수출을 위해 부담할 탄소국경조정세의 금액 수준은 약 3,620억 원으로 추산된다.

3) 공급망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박가영, “미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스코프3 배출량 제외”, 「ESG 경제」, 2024.3.7.자, 접속일 2024.3.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2>

5)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공급망 ESG에 대한 기업인식 및 협력현황 조사”, 2021.10.15.자, 접속일 2023.7.26,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4272&CHAM_CD=B001

하였다.⁶⁷⁾

국내 기업 중 공급망 ESG 관리를 고도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포스코와 네이버가 있다. 두 기업은 각각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ESG 리스크 개선이 미흡한 협력사에 대하여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문제, 안전사고, 부패 등 ESG 리스크가 심각한 협력사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소싱그룹 등록기준 대비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실적 혹은 2년간 거래 실적이 없는 협력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40개사에 대하여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167개사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⁸⁾ 네이버 역시 Integrity Code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네이버 Green 파트너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협력 업체의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재계약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⁹⁾

위와 같이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수단으로 ‘상사중재’가 활용될 수 있다. 상사중재는 상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엄격한 당사자주의와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간명함과 경제성을 주 특징으로 하는 상사중재는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급망 ESG 분쟁에서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에 주목하였다. 포스코와 네이버의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분쟁을 유형화하였고, 상사중재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그다음 유형별 분쟁 모의사례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논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급망 ESG 관리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 상사중재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6)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 “商議, 공급망 내 중소·중견 협력사 ESG 진단·컨설팅 나간다”, 2023.3.3.자, 접속일 2023.7.26.,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167&CHAM_CD=B001

7) 다만, 위 2021년 조사 결과, 공급망 ESG 관련 협력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중 그 협력요구 강도가 ‘강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37.1%이고, 공급망 ESG의 경영활동에서의 부담 정도가 ‘부담된다’로 응답한 기업이 41.5%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급망 ESG 관리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8) 포스코, “2022 POSCO 기업시민보고서”, 2022, p. 59.

9) 네이버, “2022 NAVE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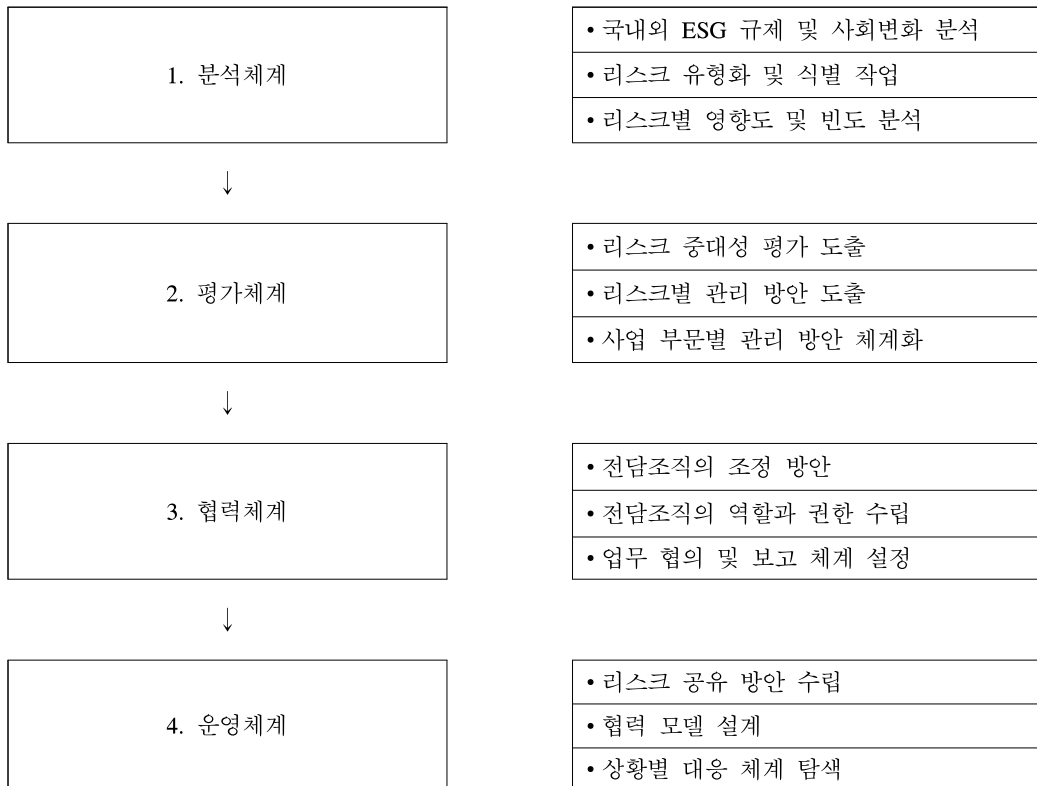
II. 공급망 ESG 관리와 분쟁의 유형

1.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는 기업 및 산업별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이 놓인 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인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ISAC(Identify, Systemize, Assemble, Coordinate) 모델’이 있으며, 포스코와 네이버가 구축·운영 중인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 역시 ‘ISAC 모델’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1) ISAC 모델¹⁰⁾

〈표 1〉 공급망 ESG 관리 모델 : ISAC 모델



10) 박준기·이연우, “ESG는 리스크 아닌 경쟁력 키울 기회”, 『동아&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10., 접속일 2023.7.30,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223/ac/magazine 참조.

‘ISAC 모델’은 공급망 ESG 관리를 네 단계의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체계’에서는 국내외 ESG 규제 정책 및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ESG 리스크를 식별한 뒤, 각 유형별로 리스크 영향을 분석한다. ‘평가체계’에서는 공급망 ESG 리스크의 중대성을 평가한 뒤, 사업 부문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협력체계’에서는 전담조직의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전담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수립하고, 업무 협의 및 보고 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 ‘운영체계’에서는 협력사와의 ESG 관리 공유 방안을 수립한다.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상황별 대응 체계를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 포스코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¹¹⁾

〈표 2〉 포스코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

단계	대상	목적	관리전략
협력사 평가 사후관리	공급망 내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의 ESG 리스크 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협력사에 혜택 또는 제한을 가하여 ESG 리스크를 관리함 	분기 및 연간 보고서 발행
			협력사의 강점·약점 피드백
			우수 협력사에 혜택 부여
			자발적인 개선 유도
상시 리스크 관리	공급망 내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건한 공급망 체계 구축 협력사의 자체적인 개선 유도 	입찰 참가 제한 조치 활용
			협력사 평가 시뮬레이션 제공
			상시 모니터링
			거래 중단 조치
			입찰 등록 취소 조치

포스코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는 ‘협력사 평가 및 사후관리’와 ‘상시 리스크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 ‘협력사 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평가 및 점검하고, 연간 단위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ESG 리스크를 개선할 기회를 얻는다. 우수 협력사로 선발된 업체는 우선 협상권, 계약 관련 보증금 납부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ESG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사는 ‘개선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선이 미흡한 협력사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¹²⁾

11) 포스코, 위 보고서, p. 59.

12) 포스코, 위 보고서, p. 59.

‘상시 리스크 관리’ 단계에서는 수시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2022년부터는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선이 불가할 정도로 환경문제, 안전사고, 부패 등 ESG 리스크가 심각한 협력사와는 거래를 중단한다.¹³⁾

(3) 네이버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¹⁴⁾

〈표 3〉 네이버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

단계	대상	목적	관리전략
협력사 선정	신규거래 희망 예비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전 ESG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검토 선정기준 내 ESG 리스크 수준 확인 	ESG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ESG 법률 위반 여부 확인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계약체결	기존/신규거래 계약체결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가 지향하는 ESG 실천 방향성에 대한 협력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 	지속가능경영 실천협약서 활용
공급망 내 주요협력사 선정	공급망 내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네이버 공급망 내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는 협력사에 대한 현황 점검 	ESG 리스크 정기 점검
			ESG 이슈 사전 예방
			ESG 이슈 해결 능력 제고
정기 평가	공급망 내 주요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안전·환경·윤리영역의 리스크 진단 리스크 식별 시 개선조치 	협력사 방문 및 실사
			ESG 리스크 개선방안 논의
			재계약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

네이버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는 ‘협력사 선정’, ‘계약체결’, ‘공급망 내 주요협력사 선정’, ‘정기 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는 예비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한다. 자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 전반에서 ESG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으며,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경영성과가 확인된 협력사는 경쟁 입찰 진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협력사와 ESG 리스크를 방지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협력사는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네이버가 지향하는 공급망 ESG 실천 방향성에 동참한다. 실천협약서는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체결된다. ‘공급망 내 주요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13) 포스코, 위 보고서, p. 59.

14) 네이버, 위 보고서, p. 81.

이 필수적인 주요협력사를 선정한다. 주요협력사는 정기적으로 ESG 리스크를 평가받고, 개선할 수 있다. 네이버는 주요협력사가 ESG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 ESG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인권·안전·환경·윤리 4개 영역의 리스크를 진단한다. 협력사의 리스크가 식별되면 네이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리스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 현황을 점검한다. 협력사가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공급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계약 완료 후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해당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¹⁵⁾

2. 분쟁의 유형

‘ISAC 모델’ 및 ‘포스코와 네이버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ISAC 모델의 ‘평가체계’에는 성과평가가, ‘운영체계’에는 피드백·제재 조치가 매칭된다.

다만, 그러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급망 관리자일 뿐 협력사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부분요소라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가체계와 운영체계를 통해 공급망 관리자가 행하는 거래 중단 조치, 협력사 지원에 소요한 비용청구,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구상금 청구 등이 분쟁의 다수를 이룰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분쟁 발생 ‘단계’와 ‘내용’에 따라 분쟁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공급망 관리자가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선 미흡이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2)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협력사의 ESG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관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각 분쟁 유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III.2.에서 제시한다.

15) 네이버, 위 보고서, p. 81.

Ⅲ. 분쟁의 중재

1. 상사중재 활용의 적합성 검토

(1) 상사중재 활용의 장단점

상사중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기밀이 보호된다.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기업 신뢰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¹⁶⁾을 고려할 때, ESG 리스크는 기업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분쟁을 둘러싼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기밀성이 보장되어 ESG 리스크로 인한 평판 훼손을 방지하는 데에 유용하다.

둘째, 절차가 유연하다. 공급망 ESG 관리는 공급망 관리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경제적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는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책임을 분담한다. 중재제도의 유연성은 당사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반목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컨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과정에서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셋째, 중재인의 전문성이다. ESG 관련 분쟁은 인권, 환경, 노동 전반에 걸친 복잡다단한 분쟁인 경우가 많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6월 1일을 기준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총 1,042인의 전문중재인이 위촉되어 있다. 전문중재인이 소속된 각 영역을 살펴보면, 법조계는 1,042인, 실업계는 311인, 학계에는 234인, 회계사나 변리사는 13인, 그 외 공공단체나 기타 단체에 소속된 전문중재인은 115인이다.¹⁷⁾ 전문중재인은 법률, 실무 지식, 상거래 관습법을 포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활용할 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다.¹⁸⁾

넷째, 집행력을 담보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뉴욕협약’) 제3조에 따라 당사국에 위치한 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 절차를 거치면, 중재 내용을 토대로 전 세계 170개국에서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다.¹⁹⁾

16) 이선미·박종철,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2, p. 264.

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2023,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

18) 안건형,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ESG 분쟁의 중재 활용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22, p. 391.

다섯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이다. 먼저, 중재는 단심제로 이뤄져 있어 절차가 간명하여, 3심제인 소송보다 시간이 절약된다. 최근 5년 기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내릴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220일이었다(국내중재 약 190일, 국제중재 약 340일).²⁰⁾ 그러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 상소심 절차까지 마치려면 평균 1095.2일이 소요된다.²¹⁾ 다음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2021년 11월 기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억 원 규모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재 비용은 평균 1,625,000원이었던 반면 소송비용은 평균 4,204,500원이었다.²²⁾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들은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첫째, 결과의 예측이 불확실하다. 중재란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소송절차의 엄격성을 완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²³⁾ 특히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른바 ‘중재인의 월권행위’가 문제되어 중재판정 자체가 사법권에 의하여 취소될 위험이 있다.²⁴⁾

둘째, 진실발견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존재한다. 소송의 경우 공권력을 이용하여 증인을 소환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재판정부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는 한 사안의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²⁵⁾

셋째, 다수당사자 분쟁의 경우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곤란하다. 소송의 경우 공동소송, 소송참가, 인수, 소송고지, 변론의 병합 등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나, 중재의 경우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탈퇴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²⁶⁾

넷째, 국내중재에 있어 소송보다 집행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중재에서는 소송보다 집행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²⁷⁾ 다만, 최근 중재지 국가의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보장하는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점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²⁸⁾

1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2022, p. 7.

21) 대법원, “2023 사법연감”, 2023, p. 724.

22) 대한상사중재원, 위 간행물(주 20), p. 6.

23) 사법정책연구원, “중재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8, p. 12.

24) 도혜정, “중재절차 중 ‘화해의 유도’와 ‘조정-중재’제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0, p. 55.

25) 사법정책연구원, 위 보고서, p. 12.

26) 사법정책연구원, 위 보고서, p. 12.

27) 사법정책연구원, 위 보고서, p. 13.

28) 사법정책연구원, 위 보고서, p. 13.

(2) 검토

상사중재 활용의 장단점을 이익 형량하였을 때, 상사중재는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서로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리적으로 공격·방어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될 여지가 크지만, 중재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 간의 대립구조를 완화하여 신뢰 회복을 돕고 원활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상사중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모두 절차 진행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공급망 구성원 및 분쟁 발생 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해결 과정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사안에서 상사중재의 단점이 장점에 의하여 상쇄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다면, 상사중재가 분쟁 해결의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사중재가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중재가능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가는 일정한 유형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므로, 특정 국가의 관할 당국이 공급망 ESG 관리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로써 유보한 경우 중재가능성이 부정된다.²⁹⁾ 또한,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이해관계인 등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망 관리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중재합의 또는 기존 분쟁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상사중재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³⁰⁾

2. 분쟁 유형별 모의사례와 중재 방안

(1)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공급망 관리자가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선 미흡이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1) 모의사례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미흡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계약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나, 협력사의

29) 김인호,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제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 한국사법학회, 2016. p. 1149, 참조.

30) 강수미,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3. p. 74, 참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해당 기업으로서의 공급망 관리자의 거래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협력사 A(이하 ‘A’라 한다)가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하도급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네이버는 계약체결 이전 A의 ESG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였고, 계약체결 당시에는 A로 하여금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ESG 성과평가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A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직원의 추가 채용은 물론 기존 직원의 수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졌고, A는 결국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소수의 직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를 인지한 네이버는 자체 조성한 상생펀드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였다.³¹⁾ 그러나 A는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여 부채비율을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네이버는 A의 ESG 리스크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거래 중단을 선언하였다. A는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때까지 ESG 리스크 평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네이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는 네이버가 협력사의 구체적인 사정은 무시한 채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을 형식적으로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네이버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재 방안

이 사안의 쟁점은 1) 네이버와 A가 체결한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의 성격, 2) A의 ESG 리스크 개선 미흡이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3) 네이버의 거래 중단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이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의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는 ‘협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A가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계약서에 부수되어 당사자 일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²⁾

다음으로 A의 ESG 리스크 개선 미흡이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겠다. 우선 이 사안에서 A가 법정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여 계약상 의무인 ESG 리스크 개선

31) 네이버는 172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시중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022년 12월 기준, 총 47개사에 15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32) 업무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관례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다만, A가 법정 근로시간을 미준수하게 된 것이 재정위기에 따른 이차적인 효과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A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책임 없는 사유라 함은 소위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네이버는 계약체결 이전 A의 ESG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ESG 리스크 수준, 신용등급, 재무능력, 공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A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는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³³⁾ 네이버와 A가 체결한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A의 재정위기 발생은 ‘법령에서 사용하는 불가항력’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책임 없는 사유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거래 중단 조치가 부당한지 검토하겠다. 우선 네이버가 선언한 거래 중단이라는 것이 A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A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거래 중단이 계약관계의 소멸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의미하는 경우 A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므로 따져볼 실익이 있다. 즉, 네이버가 계약관계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상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네이버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민법 제537조),³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네이버로부터 지급받은 중간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및 제2항).³⁵⁾ 그런데 네이버 역시 A에 ESG 리스크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공급망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A에게는 ESG 리스크를 네이버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네이버에게는 A의 ESG 리스크 개선을 성실히 지원하여 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 네이버가 A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보이고, 자체 조성한 상생펀드를 통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재정

33)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부품 조달지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34)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35) 대한상사중재원 ‘소프트웨어사업표준화도급계약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당사자 중 일방이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할 경우, 타방은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위기를 타개하라는 제안은 A가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것이므로, 네이버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를 때,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미흡이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불가항력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망 관리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면, 거래 중단 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2)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1) 모의사례

먼저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잠재적 협력사 확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POSCO IMP(Idea Market Place)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력사 B(이하 'B'라 한다)에 SEED 5억 원을 투자하고 법률·세무·회계·노무·특허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B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는 전고체전지용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는 계약체결 이전 B의 ESG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였고, 계약체결 당시에는 B로 하여금 '행동규범'과 '윤리특별약관'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ESG 성과지표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B가 포스코에 제공할 ESG 리스크 개선 보고서 작성을 두고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법무법인과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계법인 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회계법인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B에 보고서 인증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주겠다는 의도를 전달하였다.³⁶⁾ 이후 포스코는 ESG 성과평가 점검 및 실사 과정에서 B의 재무제표 분석 내용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B에 그에 대한 소명과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지급한 SEED 5억 원 및 컨설팅에 소요한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B는 ESG 리스크 개선 보고서 작성 중 해당 부분을 회계법인에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급망 관리자가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의 가상 분쟁 사례를 변형하여 살펴보자. 포스코는 B와의 계약 체결 이전 탄소 배출량을 kWh당 58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기술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36) 김명환·최희석, "ESG 공시 놓고 회계법인·로펌 티격태격", 「매일경제」, 2023.5.18.자, 접속일 2023.7.30., <http://stock.mk.co.kr/news/view/127168> 참조.

확인하였고, 실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B가 당장 보유한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차 성과평가에서 B의 탄소 배출량이 kWh당 60kg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확약한 기준인 58kg 이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성과평가에서도 B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포스코는 B가 애초에 실현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자신을 기망한 것이므로,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지급한 SEED 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중재 방안

이 사안의 쟁점은 1) 포스코가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SEED 5억 원과 컨설팅 비용)의 성격, 2) B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B에게 지원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여부, 3) B의 ESG 리스크 개선 역량이 애초에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B에게 지원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포스코가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동반성장 지원이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행하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³⁷⁾ 이 사안에서는 포스코가 B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SEED 5억 원과 ‘간접’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문제되는데, 두 가지를 나누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 SEED 5억 원의 경우 포스코가 ‘POSCO IMP 프로그램’을 통하여 B에 투자한 것이므로, 계약서상 투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이 있거나 계약서상 별도로 명시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 사용 또는 사용 근거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민법 제741조). 반면 컨설팅의 경우 포스코와 거래 관계에 있던 컨설팅 법인이 포스코로부터 기존 거래내용에 더하여 협력사 컨설팅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추가대금을 지급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포스코가 B를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컨설팅 법인이 협력사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공급망 관리자 및 협력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의 분쟁으로 볼 것은 아니며 공급망 관리자와 컨설팅 법인 간의 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포스코가 B를 위하여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 중 SEED 5억 원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컨설팅 비용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B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제3자인 회계법인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

37) 포스코는 동반성장 8대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재무성과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장기공급 계약권을 부여하는 성과공유제, 공정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화 역량 강화, 1·2차 대금직불체계, 철강 ESG 상생펀드, 기업시민 프렌즈, 포유드림 잡매칭, 동반성장지원단, 벤처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에도 B에게 지원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 사안에서 회계법인은 ESG 리스크 개선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신의 사업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B에 보고서 인증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주겠다는 의도를 전달하였고, B는 이를 수용하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회계법인에 일임하였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분석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에 B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문제되는바, 회계법인이 보고서 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이 포스코에 대한 업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B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B는 보고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일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원 비용 반환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B와 회계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 및 보고서 작성과 인증 과정에서 추정되는 B의 기망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B의 ESG 리스크 개선 역량이 애초에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B에게 지원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 사안에서 B는 계약체결 이전 포스코에 탄소 배출량을 kWh당 58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기술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포스코는 B의 비전이 당장 보유한 기술로는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B의 역량을 평가한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문제되는바, B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포스코를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포스코가 B의 기망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포스코가 B의 비전이 당장 보유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포스코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에게 실질적인 기망의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를 때,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사의 비용 반환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협력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역량이 애초에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공급망 관리자의 계약체결 이전에서의 과실 여부와 협력사의 기망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망 관리자의 과실이 부인될 여지가 적고, 협력사의 기망의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결과를 당사자가 수궁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협력사의 ESG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관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1) 모의사례

협력사의 ESG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관리자가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ESG 리스크 개선 요구 외에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또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다면 금액의 산정 및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 부담부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하여 협력사 C(이하 ‘C’라 한다)와 핵융합 플라즈마 상용로를 이용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포스코는 계약체결 이전 C의 ESG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였고, 계약체결 당시에는 C로 하여금 ‘행동규범’과 ‘윤리특별약관’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ESG 성과평가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1억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원자핵을 융합시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핵융합 플라즈마 상용로의 특성상 C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가 초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주의·관리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C가 그러한 주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C는 상용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포스코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ESG 평판 훼손이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ESG 성과지표 악화보다 더 중대한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량 생산을 위하여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포스코는 EU 집행위원회가 EU 역외국 기업에 제시하는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하였다. 현재 포스코는 C의 ESG 리스크 및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C에게 CBAM 인증서 구매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재 방안

이 사안의 쟁점은 1) C의 신의칙상 주의·관리 의무위반의 처리, 2) C의 주의·관리 의무위반과 그로 인해 포스코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3) 포스코가 입은 손해의 성격, 4) 포스코와 C의 부담부분 산정방식이다.

먼저 C의 신의칙상 주의·관리 의무위반의 처리를 검토하겠다. 이 사안에서 포스코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출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와 핵융합 플라즈마 상용로를 이용한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는 설비가 초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주의·관리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해석 및 의무 이행과 관련한 신의칙 위반의 경우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 내지는 채무불

이행으로 처리된다는 견해도 있으나,³⁸⁾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이행에 있어서의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³⁹⁾

다음으로 C의 주의·관리 의무위반과 포스코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C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용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고, 포스코는 ESG 평판 훼손이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ESG 성과지표 악화보다 더 중대한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로 인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C의 그러한 주의·관리 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포스코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주의·관리 의무위반과 포스코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⁰⁾

그다음으로 포스코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포스코가 입은 손해는 전력 수급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EU 당국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즉, CBAM의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다. CBAM은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증서의 가격이 EU ETS와 연계되므로 그 가격이 관할 당국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하여 결정된다.⁴¹⁾ 그렇다면, CBAM의 성격에 대하여 시장을 기반으로 한 조치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며, 포스코의 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로서 포스코로부터 ESG 성과평가 점검 및 실사를 받는 C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손해가 된다.⁴²⁾

마지막으로 포스코와 C의 부담부분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 포스코의 손해가 특별손해임을 밝혔으므로, 금액의 과다 여부보다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계약체결 이전 C의 ESG 리스크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포스코의 과실과 C의 주의·관리 의무위반 정도를 비교하여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포스코가 공급망 관리자로서 CBAM을 구매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포스코로서는 C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38) 태기정, “신의칙 위반의 효과”,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p. 164.

3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등 참조.

40)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등 참조).

41) 소병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p. 294.

4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를 때, 협력사의 신의칙상 의무위반과 공급망 관리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만, 협력사의 신의칙상 의무위반을 불법행위로 처리하는 경우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협력사가 공급망 관리자에게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공급망 관리자에게 분배된다.⁴³⁾⁴⁴⁾

IV. 대한상사중재원에의 제언

1. 공급망 ESG 관련 표준계약서 제작

대한상사중재원은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 의무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작 및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포스코와 네이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 ESG 리스크 관리 의무는 계약 과정에서 기본계약서에 더하여 ‘행동규범’, ‘윤리특별약관’,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협약서들의 법적 효력을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선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분쟁 해결의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 표준계약서 작성 원칙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의무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 해결 절차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체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중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첫째, 신속한 구제이다. 공급망 ESG 관리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력사로서는 긴급 구제를 신속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시로 또는 최종적으로 신속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에 신속 중재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44)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등 참조).

둘째, 명확한 관할권 및 준거법 지정이다.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는 국내 기업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지만,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공급망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중재 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 ESG 리스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관할권과 준거법을 사전에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기업 간에 공급망 ESG 관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 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사법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및 준거법의 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배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묵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⁴⁵⁾

셋째, 손해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이다.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을 필두로 국가주도의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당 법령에서는 “이 법에 따른 의무위반은 민법상의 책임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이 법과 무관한 민법상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즉, 공급망 관리자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인권 보호와 환경 관련 기준에 대한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정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공적 책임만 성립할 뿐 관할 당국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⁴⁷⁾ 이때 당해 법과 무관한 민법상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 발생한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당해 법령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 및 네이버 등 민간이 개별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 간 분쟁에서 일방이 입은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계약 내용의 해석과 당사자들의 행위 간 인과관계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사상 책임에서 ‘지속가능경영실천협약서’ 등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산업별 표준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급망 ESG 관리 특유의 불가항력 사유 등을 열거한다든가⁴⁸⁾ 수입국의 법령 역외적용으로 일방에게

45) 허해관, “국제상사중재에서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중재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23, p. 97.

46)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LkSG).

47) 장혜진·최윤경, “ESG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3, p. 269.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시 타방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등을 둔다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부재 속에서도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판정을 내리기 용이할 것이다.

넷째, ‘공급계약 중단 사유’와 ‘개선 권고 조치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다. 위 모의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가 자신의 의무 불이행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가 공급망 관리자로부터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거래를 중단할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작성 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거래 중단을 단행하고 경미한 사유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아래 각호의 경우 거래 중단조치를 단행한다. 1. 위반상황이 심각한 경우 2. 공급망 관리자 지위에 있는 기업이 협력사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일정 기간 도과 후에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다른 수단이 없고 영향력 행사의 성공 기대가 없는 경우”와 같은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표준계약서 작성 시 참고 사례

공급망 ESG 관리 의무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구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인의 전문성을 사전에 명시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기후변화 관련 표준중재조항은 “중재인(들)은 기후변화 정책 및 기후변화 법률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인의 기후변화 관련 전문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⁹⁾ 이처럼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요소와 관련된 전문중재인을 위촉할 것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중재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에 역외적용되는 타국의 공급망 ESG 실사 관련 법령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EU 공급망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공급망 실사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역내국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국 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한다.⁵⁰⁾ 비록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EU의 계획대로 해당 법령을 2024년 4월 이내에 제정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미 EU가 산업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들 역시 역외국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EUBR)’은 EU 시장 내에 배치된 모든

48) 다만, 분쟁 발생 이후 일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계약서상에 열거된 불가항력 사유들을 ‘예시적 열거’가 아닌 ‘한정적 열거’로 보는 것이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사법 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9)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rbitration and ADR Commission Report on Resolving Climate Change 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nd ADR”, 26 November 2019. pp. 19-25.

50) 김홍준, “EU 공급망 실사법 ‘독일 반대’에 좌초 위기, 한국 건설업계 ESG 향방 촉각”, 「비즈니스포스트」, 2024.2.22.자, 접속일 2024.2.22,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310

유형의 배터리와 관련된 제조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⁵¹⁾ 또한, 앞서 살펴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⁵²⁾를 비롯하여 ‘산림벌채금지법(EU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EUDR)’ 등도 역외국 기업에 공급망 ESG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역외적용될 소지가 있는 타국의 공급망 ESG 실사 관련 법령을 점검하여 표준계약서에 역외적용 법령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일반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인권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표준 계약 조항은 국제 공급망의 구매자에 대한 인권 의무를 포함하도록 ESG 의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⁵³⁾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서의 인권침해는 산업 관행, 실사 부족, 기초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리스크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협력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자 지위 있는 기업에도 부과한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에게는 책임 있는 운영을, 협력사에게는 직원과 하청업체를 윤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받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표준 계약 조항에서는 공급망 관리자 지위에 있는 기업과 협력사 모두에게 인권실사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실사 의무 부과는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실사 지침 등 국제적인 기준을 따른 것이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실사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인권실사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전문중재인 위촉을 위한 ESG 교육과정 개설

상사중재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전문중재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중재인을 위촉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ESG 분야에 특화된 전문중재인이 위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향후 공급망 ESG 관리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전

51) 장윤제, “ESG 위협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무역구제연구」, 통권 제68호, 무역구제학회, 2023, pp. 100-101.

52) 김현정,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내·외 논란 및 법적 정합성”,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p. 184.

53) C. Mark Baker, Cara Dowling, & Carmel Proudfoot, “Supply chain disput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Norton Rose Fulbright, 2021. pp. 6-8.

문중재인을 위촉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 내부적으로 ESG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문중재인들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ESG 평가지표와 ESG 관련 규범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ESG 관련 국제기준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발전 및 개선되고 있으므로 연성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ESG 규범이 상이하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공급망 ESG 분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공급망 ESG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ESG 경영’은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ESG 경영을 둘러싼 여러 이슈 가운데, ‘공급망 ESG 관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 대하여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강건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EU와 SEC 등 기관이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기업평판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계 역시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와 네이버가 있다. 이 두 기업은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 ESG 관리를 고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ESG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두 주체 간에 새로운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예상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단계’와 ‘내용’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유형화하면, (1)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공급망 관리자가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선 미흡이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2)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공급망 관리자가 협력사에 동반성장 지원의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협력사의 ESG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관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수단으로 ‘상사중재’가 있다. 상사중재는 중재위원회의 전문성, 시간과 비용면에서의 효율성,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기밀성, 충분한 진술 기회 보장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급망 ESG 관리에서 공급망 관리자와 협력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에 주목하였다. 국내 기업 중 포스코와 네이버의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분쟁을 유형화하였고, 상사중재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그다음 유형별 분쟁 사례를 모의로 설정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논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급망 ESG 분쟁에서 중재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 상사중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3.
- 김인호,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 한국사법학회, 2016.
- 김현정,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내·외 논란 및 법적 정합성”,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 도혜정, “중재절차 중 ‘화해의 유도’와 ‘조정-중재’제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0.
- 소병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안건형,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ESG 분쟁의 중재 활용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22.
- 이선미·박종철,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2.
- 장윤제,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무역구제연구』, 통권 제68호, 무역구제학회, 2023.
- 장혜진·최윤경, “ESG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3.
- 태기정, “신의칙 위반의 효과”,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 허해관, “국제상사중재에서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중재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23.
- 네이버, “2022 NAVE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2022.
- 대법원, “2023 사법연감”, 2023.
- 사법정책연구원, “중재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8.
- 포스코, “2022 POSCO 기업시민보고서”, 2022.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C. Mark Baker, Cara Dowling, & Carmel Proudfoot, “Supply chain disput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Norton Rose Fulbright, 2021.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rbitration and ADR Commission Report on Resolving Climate Change 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nd ADR”, 26 November 2019.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Lk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김명환·최희석, “ESG 공시 놓고 회계법인·로펌 티격태격”, 「매일경제」, 2023.5.18.자, 접속일 2023.7.30., <http://stock.mk.co.kr/news/view/127168> 참조.

김홍준, “EU 공급망 실사법 ‘독일 반대’에 좌초 위기, 한국 건설업계 ESG 향방 촉각”, 「비즈니스포스트」, 2024.2.22.자, 접속일 2024.2.22.,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310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공급망 ESG에 대한 기업인식 및 협력현황 조사”, 2021.10.15.자, 접속일 2023.7.26.,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4272&CHAM_CD=B001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 “商議, 공급망 내 중소·중견 협력사 ESG 진단·컨설팅 나선다”, 2023.3.3.자, 접속일 2023.7.26.,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167&CHAM_CD=B00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2023,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

박가영, “미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스코프3 배출량 제외”, 「ESG 경제」, 2024.3.7.자, 접속일 2024.3.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1>

박준기·이연우, “ESG는 리스크 아닌 경쟁력 키울 기회”, 「동아&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10.자, 접속일 2023.7.30.,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223/ac/magazine

ABSTRACT

A Study on Expected Dispute Arbitration in Supply Chain ESG Management: Focusing on the cases of POSCO and NAVER

Lee, Geonwoo

Lee, Jungeun

Lee, Hunjong

"ESG management" guides companies to priorit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key management objectives, going beyond mere financial performance pursuits. This approach involves creating a sustainable and robust supply chain by urging companies, acting as 'supply chain managers', to implement ESG management practices alongside their 'supply chain partners'. The domestic business community has been quick to respond to this trend, recognizing that failure to adhere to ESG standards set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EU and SEC could lead to severe repercussions, including exclusion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reputational damage.

POSCO and NAVER, two leading Korean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practicing ESG management effectively. They have both produced and publicly disclosed ESG management reports, showcasing their success in enhancing supply chain ESG management. However, as supply chain managers enforce ESG-related obligations on their suppliers, the likelihood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may increase.

In scenarios where supply chain ESG management leads to conflict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commercial arbitration emerges as a viable solu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is method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the arbitrators' expertise, time and cost efficiency, the binding nature of decisions akin to a court's final judgment, international recogni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confidentiality, and ample opportunity for parties to be heard.

Our analysis focuses on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within the context of supply chain ESG management, particularly examining the cases of POSCO and NAVER. By categorizing the expected types of disputes and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ir resolution, we highlight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Furthermore, we propose leveraging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s role to enhance the use of arbitration in resolving supply chain ESG disputes, underscoring its potential as a strategic tool for maintaining sustainable and harmonious supply chain relationships.

Key Words : ESG, Supply Chain, Commercial Arbitration, Standard Contract, Professional Arbitrator